

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

([]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[] 일방적 사전승인)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인	① 법인명(상호)	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(성명)		
	④ 업종		⑤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
	⑥ 소재지(주소 또는 거소)		
대리인	⑦ 법인명(상호)		⑧ 사업자등록번호
	⑨ 성명		⑩ 구분 [] 세무사, [] 공인회계사, [] 변호사
	⑪ 생년월일		⑫ 전화번호 (사업장) (휴대전화)
관련 기업	⑬ 법인명(상호)		⑭ 소재 국가
	⑮ 대표자(성명)		⑯ 업종
	⑰ 소재지(주소 또는 거소)		
	⑱ 신청인과의 관계 [] 모자관계(지분율: %) [] 본점·지점 관계 [] 기타(관계:)		
⑲ 대상 거래			
⑳ 정상가격 산출방법			
㉑ 적용기간			

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대리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	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 1. 거래 당사자의 사업 연혁, 사업 내용,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.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, 세무신고서 사본,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.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의 구체적 설명자료(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) 4. 국제거래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.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(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계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6. 그 밖에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※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비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